



제304회 임시회
2011. 10. 24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비용추계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조)
-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1조, 제12조)
-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3조, 제14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

입안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○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

-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,
-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방법, 재원조달방안의 작성, 작성 부서 및 제출 시기 등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5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비용추계 작성의 협조 등을 명시하는 등 적절하다고 사료되나,

○ 다만,

- 안 제11조제3항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, 주민대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·첨부하도록 한 조항의 적절성 여부와,
- 안 제11조제4항제1호의 ‘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’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,
-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다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5조(예고문 작성)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삭제</p>
<p>제18조(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)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삭제</p>
<p>제20조(자치법규 정비) ① 도지사는 제정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삭제</p>